

# 한국 정부의 5 차 자유권 규약 보고전 쟁점목록(LoIPR)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제 126 차 자유권 위원회  
2019 년 7 월 1 일 - 7 월 26 일

##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4·9 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 연락

백가윤 | 제주다크투어, (064) 805 0043, [gayoon@jejudarktours.org](mailto:gayoon@jejudarktours.org)

이사랑 | (재)진실의 힘, (02) 741 6260, [elove1212@gmail.com](mailto:elove1212@gmail.com)

## 서문

한국의 근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분단, 한국전쟁, 군사독재를 경험하면서 강제노동, 성폭력, 고문, 감금, 학살 등의 국가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다. 시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아래, 국가는 과거의 국가폭력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를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 또한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국가 폭력 사건 중 대부분은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을 비준한 1991 년 이전에 발생했다.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 비준 이전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중 그 어떤 사건도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진실 규명, 가해자 처벌, 배상과 재발방지에서 사건 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미완이거나 미흡한 문제를 갖고 있다.

2005 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졌으며, 2005 년 12 월 1 일, 이 법에 따라 과거청산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제한된 조사권과 한시적인 조사기간, 보수정권의 방해 등으로 인해 한국의 근현대를 가로질러 발생한 방대한 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 채 2010 년 문을 닫고 말았다. 더욱이, 그나마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그나마 일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의 사죄나 피해자 구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가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가해자 처벌, 역사교육 등의 후속조치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과거청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 2 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설치를 국가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규약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규약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 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거청산의 첫걸음이며 다른 인권 보장을 위한 초석이다.

## 일반적 사항

### 규약의 효력 및 재판에 원용된 사례

헌법에 의하여, 가입 및 비준한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은 규약이 국내법상 법률로서 효력이 있다고는 인정하나<sup>1</sup>, 정부 비준 규약을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군다나 규약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도, 추상적인 규약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아, 자유권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반논평이나 개인 진정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sup>2</sup>

## 제 2 조 차별 없는 자유권 존중, 구제 조치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sup>1</sup> 헌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sup>2</sup> 일례로 2003년 7월 16일 채택된 강용주 씨에 대한 개인진정(CCPR/C/78/D/878/1999)에서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다. '규약제 2 조 3 항(a)에 따라 한국정부(정부)는 진정인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진정인은 석방되었으나(1999년 특별사면됨), 정부는 본 진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규약 상의 위반사항이 갖는 준엄함에 상응하는 배상을 진정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정부는 미래에 비슷한 위반을 반복해선 안 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개인진정에서 명시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용주 씨는 이후 보고서에서 언급할 '보안관찰법' 상 피보안관찰자가 되어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보안관찰에 대한 불복종 투쟁을 한 강용주 씨에 대해 검찰은 세 차례 기소했다. 2018년 2월에서야 법원은 강용주 씨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일제 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 부재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 당시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군인, 군속, 근로정신대, 일본군 성노예, 노동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했으며 그 피해자는 연인원 약 780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오히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가로막았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 2004년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설치되어 2015년까지 진상규명과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위원회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불만족스럽지만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한시기구로 설립되어 전체 피해자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동원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해명하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남긴 채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

일본군성노예제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1993년 단 한번 일본정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이래 현재까지 일본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5년에는 피해자들의 의견과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간 합의’가 발표되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sup>3</sup>. 현 문재인 정부는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

<sup>3</sup> CEDAW/C/JPN/CO/7-8. 2016년 3월 10일: 문단 28 ~ 28번 “... ‘위안부’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양자간 합의발표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을 택하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 보장하기 위해서는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양자간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정부는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그들의 진실, 정의와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CAT/C/KOR/CO/3-5\*. 2017년 5월 30일 : 문단 47 ~ 48번 “위원회는 (a)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부장관회의에서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해당 합의는 협약의 일반권고 3번의 범위와 내용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며, 구제와 배상 (보상과 완전한 재활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 의 제공 또는 진실에 대한 권리와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권리 보장에 실패했음을 우려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d) 제 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성노예 피해생존자들의 보상과 재활의 권리를 포함한 배상, 그리고 협약 제 14조에 따른 진실,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을 위해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간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합의를 개정하라;...”

제 31차 유엔인권이사회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 연례발표/입장문. 2016년 3월 10일. “이 합의는 다양한 유엔인권기구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생존자 당사자들에 의해 문제제기를 받았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당국이 이 용감하고 존엄한 여성들과의 만남을 진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배상조치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피해자들 뿐이다.”

<관련링크>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0&LangID=E](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0&LangID=E).

다른 한일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일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는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도 가해국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체와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 보는가?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과 미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유엔의 기준과 활동들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상설적인 국가기관의 설치를 포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적 접근 원칙에 따라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치 이외에 가해국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한계**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활동했다. 강력한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해당 기관의 자료 미제출, 비협조 등으로 인해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이에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음에도 사건 신청 기간은 1년 밖에 되지 않아 뒤늦게 신청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진실규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경우 피해자들이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16,000여 명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청사건을 위주로 조사한 결과이다.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제2기 출범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9년 5월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3번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20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적인 진상규명, 배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일본/한국: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 인권전문가 입장. 2016년 3월 11일.

“우리는 일본과 한국과의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본다. 전쟁의 무기로서 사용되는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및 기타 폭력을 규탄하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여성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지함으로써 불처벌을 끝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관련링크>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9&LangID=E>.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당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 40 조는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추가진상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규에 따라 과거사 연구 재단 설립 시기와 방식, 예산과 설립 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 책임을 외면한 사법부 (제 14 조 참조)

2019년 5월 13일 현재, 박근혜 정권 하의 대법원이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행정부와 결탁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혐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규명한 사실들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고, 민법 766조에 의해 통상 3년이던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재판에서의 소멸시효 기간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6개월로 단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으며 사법부에 의해 다시 한 번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외교부와 결탁하여 판결을 번복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으며 위안부 사건의 경우 의도적으로 판결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 사법 농단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는 등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제 4 조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 위반 조치 가능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 제 11 조,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18 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적대국인 북한과 대치한다는 점은 정부가 이를 ‘특수한 안보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 상 여러 권리를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 왔다<sup>4</sup>.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1990 년 이후에도, 정부는 과거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이를 시정하거나 배상,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1948 년말 제주도에 선포한 계엄령 사건, 1970 년대 군부독재 시절 긴급조치 사건, 1980 년 광주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엄령을 무리하게 선포하고 국민들의 자유권을 자의적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정부는 1950 년 한국전쟁 시기에도 100 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학살하는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19 년 현재까지, 이러한 위반 조치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sup>5</sup>

지난 2010 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국가는 비록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비검속, 주거제한, 재산동결 등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17 년 겨울 박근혜 정부 퇴진 촉구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정당하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sup>6</sup> 이는 한국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공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근거로 자유권을 위반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제주 4.3,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고 있어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배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입법을 통한 일괄적인 피해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할 계획이 있는가?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을 밝혀라.
- 정부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구실로 계엄령 등을 선포하여 시민들의 자유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한 사례가 있었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엄령 등 공공의 비상상태를 선포하는 것이 현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비상사태의 자의적 선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인가?

---

<sup>4</sup> 2007 년 1 월 23 일 채택된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1321/2004 과 1322/2004([CCPR/C/88/D/1321-1322/2004](http://www.humanrights.or.kr/eng/eng_ccpr/c/88/d/1321-1322/2004)) 문단 4.1 ~ 4.3 참조.

<sup>5</sup> 제주 4.3 의 경우 2003 년,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규명위원회 명의로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나 실제 가해자 처벌이나 진상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sup>6</sup> 한겨레, “2017 년 현재가 박근혜 탄핵 기각했다면,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선포 계획 검토(Military considered martial law if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Park’s impeachment)”, 2018.7.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52252.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52252.html)

## 제 7 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1990년대 이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인권옹호자, 심지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구금, 고문 등이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중반부터 과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촉구 및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더 나아가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국가가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정 정도 법리를 개발하여 피해자를 구제해 왔으나 순수하게 고문만 문제가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고문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017년 1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sup>7</sup>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에서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고문 사건의 특성 상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중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반인권범죄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의 소멸시효 배제를 권고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무엇인가?
- 고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사, 검사, 법집행관 등에게 관련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관련 인권 교육의 횟수, 내용, 예산, 강사진 등을 공개하라.

### [사례] 자의적 소멸시효 적용

법원은, 1970년대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기 위하여 권위주의정권에 항거한 시민들을 ‘긴급조치’ 위반이나 계엄포고령 위반 등으로 영장도 없이 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얻은 허위자백의 증거력을 인정해 긴급조치 위반이나 소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하였다. 특히

<sup>7</sup>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9일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진 위원회다. 법무 검찰의 모습을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법무 검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5 년에 발령된 ‘긴급조치 제 9 호’와 1979 년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에는 집회 및 시위와 유언비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어, 위 규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법처리되었다. 사법부는 뒤늦게 긴급조치 제 9 호와 1979 년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위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불법구금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변호인 선임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 제 8 조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금지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b) 제 3 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정부가 1975 년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 호(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는 사회정화사업을 이유로 시민들을 ‘부랑인 수용소’에 강제감금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제공했다. 정부의 이러한 비인도적 정책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해자의 연령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했고, 성별도 관계 없었다. ‘부랑인’이란 개념은 매우 자의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이었다. 경찰과 공무원 등은 단속반을 구성해 길에 서 잠을 자고, 껌을 팔거나 구두를 닦는 일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마저 의심스럽다며 마구잡이로 ‘부랑인 수용소’에 사람들을 강제 구금했다. 이 같은 ‘부랑인 수용소’는 전국 각지에서 명백한 국가정책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부랑인 수용소의 대표적인 사례인 형제복지원의 경우, 1975 년부터 1987 년까지 운영기간 동안 18,000 명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피해자들은 강제 구금 시설에서 집단

<sup>8</sup> 형제복지원 등 부랑인 수용소에 대한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총 수용인원 등 피해자 숫자는

생활을 하고 일체의 급여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차별적 폭력,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었다. 강도 높은 노역과 폭행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의 경우, 12년 동안 밝혀진 바로만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다수의 사체가 유기되었고, 사체를 병원에 판매하기도 하는 등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반인륜범죄가 자행됐다.

1987년 1월, 형제복지원에서 구타로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면서 “부랑인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했고, 검찰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정부가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이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는 불완전했으며, 가해자 처벌에도 실패했다. 박인근 원장은 부수적인 범죄인 정부보조금 횡령으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을 뿐 ‘특수감금’, ‘폭행’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폐쇄되고 구금의 근거로 사용된 내무부훈령 410호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부랑인을 배제하는 국가정책은 이름만 바뀐 채 유지됐다.

이후 부랑인 수용소에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는 한 동안 잊혀졌으나, 2012년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하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구금시설 폐쇄 이후 제대로 사회에 복귀하지 못했으며, 그중 다수가 아직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다.

이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불처벌 투쟁을 지속하며, 단식 농성, 국토대장정 등을 계속해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앞서 낸 목소리는 선감학원, 양지원 등 다른 부랑인 수용시설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서 사건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됐다. 2019년 5월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 및 기타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주장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회 앞 노숙 농성은 550일 넘게 계속 되고 있다.

-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에 따라 불법 구금, 강제 노동,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과 타임라인을 포함하여 밝혀라.
- 지난 2018년 11월, 검찰총장이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축소, 은폐한 것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

추정에 불과하다. 형제복지원의 경우, 수용인원과 사망자 숫자는 형제복지원 월간 기관지 ‘새마을’ 상 기록에 근거해 추정했다. 해당 기록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근거가 되고 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자체적으로 수용인원과 사망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록은 남겼다.

비상상고 및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 배보상, 구제 조치 등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구제 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 제 9 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따라 군부독재 정권이 사상범을 이중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기가 종료된 사람들을 행정명령에 따라 다시 구금하는 '보안감호' 제도가 시행됐다. 사회안전법 상 구금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 없이 법무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결정되어 피보안감호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였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자동적으로 보안감호제도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법 상 보안관찰제도는 존속하여 1989년 보안관찰법이 별도로 제정됐다. 보안관찰제도는 개인을 보안감호제도처럼 구금하지는 않지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집요하게 침해하는 제도로 2019년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보안관찰제도에 대해서 제 17조 참조)

1987년 대법원은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는 보안감호제도에 대하여 이중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이므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하급심 법원은 형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안감호는 형의 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보안감호 기간에 대한 형사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안감호에 대한 피해자 형사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안감호에 대해 형사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무엇인가?

#### [사례] 보안감호에 대한 형사보상 불인정

박정희 정권은 1975년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반체제 운동을 북한의 조정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재일동포 유학생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 재일동포인 강종건 씨는 1973년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구금되어 '간첩'으로 조작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강종건 씨는 형기가 종료한 뒤에도 석방되지 않은 채 사회안전법에 따라 다시 청주보안감호소로 옮겨 약 8년간 추가 구금되었다.

강종건 씨는 2014년 형사재심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하급심 법원은 사회안전법에 따라 구금된 약 8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강종건 씨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있다.

### 제 14 조 공정한 재판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019년 3월 5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판사 14명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했다(제 2 조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 책임을 외면한 사법부’ 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가 당시 행정부와 결탁해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 등이 주요 기소내용에 해당한다. 당시 사법부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라는 사명을 외면하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민간인 학살 사건의 국가 배상 제한 판결로 1 조 3 천억원을 절감했고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해서 5,500 억원을 면제했다<sup>9</sup>”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묻는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거나 부정되면서, 고령의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기도 했다.

- 사법 농단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는 등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사법 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제 17 조 주거, 사생활, 통신의 자유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sup>9</sup> 계산법 : 대상자 9,698 명 x 1 억 3,600 만원 = 1 조 3 천, 1,140 명 x 5 억원 = 5,500 억원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서부터 시행된 보안관찰제도는 1989년 사회안전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정된 보안관찰법에도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 중 정치범을 포함하여 특정 법률을 위반한 자가 피보안관찰자가 되면 경찰에 정기적으로 본인의 주소, 가족과 동거인의 상황, 교우관계, 재산상황, 종교 및 가입단체, 직장, 여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sup>10</sup>. 또한 경찰은 정기적으로 이들에게 연락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보안관찰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또한, 보안관찰은 이미 형기를 마친 자가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또다시 사생활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2006년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재범행위로 인한 처분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지하여 불이익을 가함”이라는 이유로 보안관찰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는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현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숫자는 1,670명, 피보안관찰자 숫자는 42명이다<sup>11</sup>.

- 검사가 자의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보안관찰 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국가보안법 특정 조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고문 등 국가의 불법 수사 등으로 인해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한 경우, 피해자들의 범죄사실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원 판결 및 처벌이 완성된 이후에도 수 년 동안 보안관찰을 받았으나, ‘재범의 위험성’의 대상인 피해자들의 범죄사실

<sup>10</sup> 보안관찰법 제 18 조 [신고사항]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제 3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락기준지,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sup>11</sup> 2017년 금태섭 의원실 법무부 질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조치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사생활의 자유 등 심각한 기본권 제한과 이중처벌의 대표적인 사례인 보안관찰법 폐지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제 19 조 의사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 2 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박정희 정권은 종신집권을 위하여 1972 년에 당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불법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억압하기 위하여 1975 년부터 1979 년까지 ‘긴급조치’를 발동하였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폐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전면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으며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sup>12</sup> 2010 년,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헌법에서 정한 발동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위헌, 무효라고 판결 내렸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는 긴급조치 발동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당시 유신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법농단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긴급조치 발동이라는 국가 범죄에 대하여 공개 사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보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sup>12</sup> 589 건이 긴급조치로 기소된 재판의 수이며 이 중 282 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중 박정희·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해당돼 가장 많았고 191 건(32%)은 유신반대·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다. 85 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정치활동, 29 건(5%)은 국내재산 해외반출·공무원범죄 등, 2 건(0.5%)은 간첩사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조치로 인해 처벌받은 피해자 수는 1,140 명으로 추정된다.